

서울특별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김경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2946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5년 08월 11일

발 의 자: 김 경, 김기덕, 김원태,
민병주, 박승진, 서상열,
아이수루, 오금란, 이종태,
전병주 의원(10명)

1. 제안이유

- 2022년, 동 조례의 상위 법령인 「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, 지방자치단체에 ‘시·도 환경교육계획 수립’에 대한 의무가 규정되었고 수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에 위임되었음.
- 이에 2023년 서울특별시에서도 「서울특별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전부개정하여, 5년마다 ‘서울특별시 환경교육 계획’을 수립·시행하고 있음.
- 현재 시행 중인 ‘서울특별시 환경교육계획’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해 ‘지역 특성과 여건의 반영’ 및 ‘이행평가 결과의 환류’를 신설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환경교육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에 따라 정비함(안 제4조 제2항)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, 「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- 다. 기타 : 신 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환경교육 실행 방안
7. 환경교육을 위한 민간 활동의 활성화
8. 환경교육계획의 이행평가 및 평가 결과의 환류에 관한 사항
9. 환경교육계획의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
10.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4조(환경교육계획의 수립) ① (생략)	제4조(환경교육계획의 수립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.	② ----- ----- -----.
1. ~ 5. (생략)	1. ~ 5. (현행과 같음)
6. <u>환경교육을 위한 민간 활동의 활성화</u>	6. <u>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환경교육 실행 방안</u>
7. <u>환경교육계획에 따른 이행평가 및 재원조달 방안</u>	7. <u>환경교육을 위한 민간 활동의 활성화</u>
8. <u>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</u>	8. <u>환경교육계획의 이행평가 및 평가 결과의 환류에 관한 사항</u>
<u><신설></u>	9. <u>환경교육계획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</u>
<u><신설></u>	10. <u>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</u>
③ · ④ (생략)	③ · ④ (현행과 같음)

서울특별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

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부서(기후환경본부 기후환경정책과)에서 예산을 기편성하여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 추진계획 수립시 포함하여야 할 항목의 구체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것이므로 비용추계대상에서 제외함

[참고] 2025 서울시 환경교육 관련 예산 내역

사업명	예산액(천원)
서울 환경교육 활성화	100,000

※자료: 2025 서울시 예산서

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과
재정분석과장 이선희
추계세제팀장 김중헌
추 계 분 석 관 이설화
☎ 02-2180-7952
e-mail : sseol789@seoul.go.kr

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.